

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만 18세 미만 장애등급 1~3급 장애아 돌봄사업		
사업비 (당해년도)	2,157,300천원	(국비)605,159천원	(사비)1,552,141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장애인자립지원과	안찬율 2133-7470	김지형 2133-7472	류명조 2133-7476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601,701) 2,005,670	(x605,159) 2,157,300	(x3,458) 151,630	(x-) 7
사회복지사업보조	(x601,701) 2,005,670	(x605,159) 2,157,300	(x3,458) 151,630	(x-) 7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2,157,300,000원	=	2,157,300천원

3 사업 설명

- 사업목적
 - 상시적 돌봄 요구되는 장애아동 양육가정 과중한 돌봄부담 경감
 - 가족기능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지원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
- 사업근거
 - 법령상 근거
 -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(가족지원) 제1항 및 동법 제24조(돌봄 및 휴식지원)
- 사업내용
 - 지원대상 : 만 18세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등록 1~3급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이하 가정
 - 규 모 : 396가정/년480시간이내 지원(단 선정 후 1개월간 미사용시 서비스제한)
 - 사업기간 : 2018. 1. ~ 12.
 - 사업내용 : 장애아가족 양육지원(국가사업)
 - '18년도 소요예산 : 2,157,300천원(국비 30%, 시비 70%)
- 추진경위
 - 장애아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
 - 장애아 양육자의 '돌봄'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 필요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,157,300	
기본계획 수립	2018.01		
사업비 신청 및 집행	2018.01~2017.12	2,157,300	월별 신청 및 교부
사업비 집행 정산	2018.12~2017.12		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장애아돌보미 파견 : 347가정, 35,085건 122,701시간 서비스 제공 ○ 휴식지원프로그램 : 총 14회 650명
2016년도	○ 장애아돌보미 파견 : 398가정, 39,077건 139,639시간 서비스 제공 ○ 휴식지원프로그램 : 총 33회 497명 대상 가족캠프, 가족나들이, 부모교육, 자조모임 등 실시
2017년도	○ 장애아돌보미 파견 : 367가정, 27,620건 99,765시간 서비스 제공(2017년 9월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부담 경감
- 돌보미와 장애아동 사이의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돌보미와 양육자간의 유대관계도 향상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4	(x373,986) 1,246,621	(x-) 0	(x-) 0	(x373,986) 1,246,621	(x373,986) 1,246,621	(x-) 0	(x-) 0
2015	(x426,542) 1,421,809	(x-) 0	(x-) 0	(x426,542) 1,421,809	(x426,542) 1,421,809	(x-) 0	(x-) 0
2016	(x489,934) 1,633,109	(x-) 0	(x-) 0	(x489,934) 1,633,109	(x399,902) 1,454,187	(x-) 0	(x90,032) 178,922